해외예금보험 동향

2006. 2

2006년 1월 현재 94개국, 예금보험제도 도입

□ IADI는 2006년 1월 기준 **국가별 예금보험제도 도입현황**을 발표

○ **예금보험제도 운영 국가** : 미국, 캐나다 등 94개국

* 마샬군도, 미크로네시아, 푸에르토리코 등은 미국 FDIC에 의해 보호

○ **도입 예정 국가** : 싱가포르, 태국 등 12개국

* 카메룬, 중앙아프리카공화국, 차드, 콩고, 적도기니 및 가봉 등 아프리카 6개국은 COBAC(Commission Bancaire de l'Afrique Centrale)에 의해 보호예정

○ **도입 검토중 국가** : 호주, 중국 등 9개국

싱가포르예금보험공사(SDIC) 설립

□ 2005년 제정된 예금보험법(Deposit Insurance Act)에 따라 **싱가포르 예금보험공사가 2.8일 설립**('06.4.1 출범 예정)

○ **이사회**는 **SDIC 사장**과 **4~9인의 이사**(재무장관 임명)로 구성되는데, 부보금융회사의 임·직원 및 관련자는 이사가 될 수 없음

○ **보호대상**

- 부보금융회사 : **은행, finance companies***은 **예금보험 강제가입**

  * 예대업무 및 할부금융(hire-purchase)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(HONG LEONG FINANCE LIMITED 등 3개 회사 존재)

- 부보예금 : **싱가포르 달러표시 개인 저축성예금**

  · 기업예금, 자국은행 해외지점 예금, 양도성예금증서, 은행발행 채권 및 유가증권, 담보제공 예금(secured deposit) 등은 비보호

○ **보호한도** : 금융회사별 예금자 1인당 **S$20,000**(약 12백만원, 1S$ = 599.22원)

○ **보험료** : **통화감독청**(MAS) **감독등급**에 따른 **차등보험료율제도** 실시

○ **보호기금**

- 목표적립률 : **총 부보예금의 0.3%**(약 S$1.2억으로 예상)

  · 여유기금은 **정부채 매입** 및 **MAS앞 예치** 등의 방식으로 운용

○ **보험금 지급**

- 법원의 부보금융회사 **파산선고** 및 MAS의 **지급불능** 또는 **지급불능우려 결정시** 보험금 지급

일본예금보험공사(DICJ), 2006년도 예금보험료율 결정

□ DICJ는 기금상황 등을 감안하여 **2006년도 예금보험료율**을 **인하**하기로 결정

○ 결제성 예금은 예금평잔의 0.115%에서 0.110%로, 일반예금등은 0.083%에서 0.080%로 인하

DICJ의 예금보험료율 변동 추이

연 도	예금보험료율	
	결제성 예금	일반 예금 등
2003~2004	0.090%	0.080%
2005	0.115%	0.083%
2006	**0.110%**	**0.080%**

○ 동 보험료율은 3월 하순 DICJ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리(금융청 장관에 위임)의 인준에 의해 확정

- 4월 1일에 최종 관보에 고시예정

○ 참고로 **결제성 예금**은 **전액**, **일반 예금 등**은 **1000만엔**까지 보호

IADI Newsletter,「예금보험제도 교육방안」게재

□ IADI는 2월 Newsletter에 '예금자 및 부보금융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예금보험제도 교육방안'(Deposit Insurance and Public Education)을 게재

○ 예금보험제도는 **예금보험 관련자**들이 **보호한도 등을 인지**하고 이에 따라 **올바른 결정을 할 때 실효성이 제고**될 수 있으므로

- **교육대상**을 **특징에 따라 세분화**하여, **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**할 필요

- 이를 통해 **Bank Run**이나 **예금자 불안** 등에 따른 **금융위기를 최소화**시키고, 예금보험제도의 **경제적 기능 제고**를 기대

□ **세부 교육대상 및 교육방안**

① **고액예금자**(Large Depositors)

○ **비보호예금 비중**이 **높아 보호한도 조정 및 금융 불안시 대규모 예금이동을 초래**할 수 있는 집단

○ 상대적으로 **전문적인 금융지식을 보유**하고 있으므로, 거래 금융회사를 감시하고 예금 보유비중을 조정토록 하는 등 **시장규율이 작동토록 유인**

-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제도변경이 고액예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교육

② **소액예금자**(Small Depositors)

○ 금융회사 파산으로 인한 피해 대비가 가장 취약하고, 소문이나 불안심리 등에 따라 예금인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, **예금보호 사실을 인지**시킬 필요

- 금융회사 직원과의 접촉, 대중매체 광고 또는 웹사이트 소식지 발간 등을 통한 교육이 바람직

③ **부보금융회사 임원**(Senior Management)

○ 금융회사의 자산·부채구조를 관리

○ **임원대상 세미나**를 개최하여 제도 변화나 금융불안시 고액예금 이동으로 **부채구조가 급격히 변화**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**대비책 마련 유도**

④ **부보금융회사 실무자**(Line Management)

○ 감독보고, 보험료납부 등 **실무를 담당**하며, **소액예금자와 접촉**이 빈번

○ 실무교육 세미나 등을 통해 보호대상상품, 보험금 계산방식 및 제출자료 작성방법 등을 교육하여 **관련 법률 및 규제사항을 준수**토록 유인